

## 언론자유와 중재제도

이혜복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중재위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가장 값진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지만 언론자유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민주정치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언론자유는 민주정치실현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로 것처럼 귀중한 언론자유를 쟁취하기까지의 노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는 것은 과거 한국의 신문 역사를 돌아보면 곧 알 수 있는 사실이다.

6.29 선언으로 민주화의 길이 열린 후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보도활동과 자유로운 논평활동을 통해 언론자유를 꽃을 피우기 위해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정치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서 인정하고 그와 같은 정치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 언론자유는 필수적으로 옹호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 언론의 자유를 계속 확보 유지해 나가자면 국민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특히 대중매체 가운데에서도 신문, 방송 등이(1) 대규모로 조직된 집단으로 비대해 지고 있고, (2) 기계적, 기술적 수단으로 정보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3) 그것을 분산된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4)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1) 보도활동이나, (2) 논평활동, (3) 교육활동, (4) 오락활동, (5) 광고전달활동 등 다양한 정보전달 활동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건 고의가 아닌건 간에 언론활동이 개인의 권리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활동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헌법 규정으로 보장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와 같은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최소한의 것에 국한돼 있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대중매체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간과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대중매체가 자주적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되며 그것은 고도로 보장된 자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볼 것이다.

그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자던 대중매체 개개의 자주적 규제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들로 이뤄진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규제만으로는 미흡하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 침해사건을 사사건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면 그 절차나 시간, 물질적, 정신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침해의 피해당사자나 피해를 준 언론사의 중간에 서서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중재를 담당케 하는 「법적 조치의 전치제도」가 바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로 외국의 「신문평의회」 등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1981년 앞서 폐기된 「언론기본법」에서 마련된 것이거나 언론기본법을 폐지하면서도 언론중재제도를 존치, 오히려 그 내용을 강화한 것은 언론침해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와 확보 내지 언론창달을 위한 사회적 통제기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케 하기 위함이었다.

언론중재제도가 참설되기 이전에는 설사 언론의 침해를 입은 일반시민으로서 언론기관에 직접 불만을 호소했다 하더라도 여간해서는 정정보도의 게재요구가, 그것이 당연한 요구일 경우라도 순순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며, 문제를 법에 호소했을 경우 소송비용도 일반시민의 경우는 큰 부담이 되거니와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극심할 뿐더러, 미약한 개인의 힘으로 거대한 언론사와 맞서 법정투쟁을 펴봤자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울며겨자먹는 식으로 눈물을 머금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억울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거꾸로 언론사의 경우, 독자인 시민을 상대로 언론침해사건 때문에 법정에서 맞선다는 사실자체가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를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나 피해를 준 언론사측이나 모두 양측 중간에 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제도의 활용은 언론의 창달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 틀림 없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이 없는 언론침해사례」 등에 대해서도 내용에 따라서는 「시정권고」를 해당 언론사에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일간,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정권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언론사가 팽창하는 반면 충분히 훈련된 기자의 수가 부족한 데서 오는 한시적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제 6 공화국 출범 이후 언론사의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두드러진 현상은 언론침해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88년도의 경우 언론사의 언론침해사례를 심의한 내용은 모두 76건으로 그 중 49%(건)가 시정권고로 결정되었으며, '89년에 들어 심의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신청처리현황을 살펴 볼 때 '81년 3월 31일 이후 '88년 12월 31일까지 근 8년 사이에 모두 429건이 신청된 중재건수 중 113건이 합의를 보았고, 불 성립이 141건, 기각이 11건에, 각하가 6건, 취하 158건으로 되어 있다. '87년 이후 중재신청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89년에 들어서는 매년 같은 기간(각 연도 2월말 현재 기준)보다 월등하게 중재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언론중재 제도의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능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성전문 상과

서울신문 사회부장, 동아일보 편집부 국장, K B S 해설주간, 동 연수원장역임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